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가단24999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C 주식회사

변론 종결2021. 1. 20.

판결 선고2021. 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8,090,7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D과 사이에 D 소유인 김포시 E 지상 건물(철골조/슬라브층, 지상 1층, 연면적 449.6m², 이하 '이 사건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D은 F에게 이 사건 보험목적물을 임대하여 그로 하여금 'G'이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을 하도록 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보험목적물과 인접한 김포시 H 지상에서 가구제작 공장(철골조 샌드위치패널 4동, 연면적 1,576.66m²이다. 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피고 공장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나. 이 사건 화재 관련

○ 2019. 1. 26. 04:00경 피고 공장 내부에서 원인 불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공장은 전소하였고, 그 옆에 있던 이 사건 보험목적물을 포함한 인근 공장 등까지 연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 이 사건 화재의 원인 등에 관한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은 다음과 같다.

- 김포경찰서 : 목격자와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피고 공장 천막 가건물 일대가 발화부로 추정되나 발화 요인을 알 수 없다. 방화에 의한 범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입증자료 또한 없으므로 내사 종결함
- 김포소방서 : 피고 공장 도장동 출입구 인근 천막 내부에서 연탄난로 및 화목난로가 식별되는 점으로 보아 난로 주변 불씨 등의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피고 측 관계자들의 진술이 상이하고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출입구 인근이 화재 진압을 위해 동원된 굴삭기 중장비에 의하여 훼손되어 발굴·감식의 실익이 없어 화재 원인은 불명임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보험목적물 등이 소훼되는 손해를 입은 D에게 2019. 4. 24.까지 보험금으로 158,090,76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화재는 최초 발화지점인 피고 공장 도장동 출입문 근처 천막 내부에 있던 연탄난로와

화목난로의 불씨 내지 화원 관리상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피해를 입은 D 등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또는 제750조의 책임을 부담한다.

○ 한편 원고는 D에게 보험금으로 158,090,763원의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지급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D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공장은 가구 제작공장이고, 피고 공장 자체도 가연성 소재인 샌드위치패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할 소방서 등 관련 기관은 피고 공장 내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와 위 인정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화재가 피고 공장 또는 피고 공장 내 어떠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 또는 확대되었거나, 피고 또는 그 소속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발생 또는 확대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김포경찰서, 김포소방서 등 관계 기관은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중 김포소방서는, 피고 공장 도장동 출입구 인근 천막 내부에 연탄난로 및 화목난로가 식별되는 점으로 보아 난로 주변의 불씨 등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관련자들 진술이 상이하고, 발화 추정장소가 굴삭기 등으로 훼손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화재 원인이 불명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화재가 연탄난로와 화목난로 그 자체나 불씨 등에 의하여 발화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그와 관련된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나 주의의무위반 등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연탄난로는 가끔 사용한 적 있으나 화목난로는 오래 전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화재 당일 또는 그 직전에 연탄난로 등이 실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서(앞서 보았듯이 발화 추정장소가 훼손되어 발화 원인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연탄난로, 화목난로 등이 이 사건 화재와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김포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가 새벽시간에 발생하였고 급속하게 확대된 사실 등에서 일부 방화 관련 특이점도 발견된다고 판단하였다[을제1호증의 2(화재현장조사서)].

④ 이 사건 화재로 피고 공장이 전소 및 붕괴되는 바람에 피고 공장 내부에 어떠한 공작물이 있었고, 어떻게 설치·관리되고 있었는지 등이 제대로 확인·조사되지 않았다.

⑤ 원고는 피고 공장에 대해 막연히 화재 위험이 높고, 소화기, 스프링쿨러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만 주장할 뿐, 피고 공장의 현황이나 시설 규모가 어떠한지, 그와 같은 규모의 공장에는 법령상 어떠한 안전장치 등이 요구되는지, 실제 피고 공장의 안전시설 설치 상황은 어떠한 것인지 등과 같은 구체적인 피고 공장의 하자나 관리상의 과실 등에 관하여 주장·증명한 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차영민